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6월 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시책 추진 책임성 강화 및 역량집중을 위해 관련 사무를 해당 실국의 소관사무로 명시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남북교류협력 관련 총괄·조정 기능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명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신설 강화 규제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 : 해당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원안동의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평가제외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갈등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('18. 5. 17. ~ 5. 23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남북교류협력 총괄·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획조정실)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5.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><u>6.~11.</u> (생 략)</p>	<p>제5조(기획조정실) -----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남북교류협력 총괄·기획 및 조 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7.~12.</u> (현행 제6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**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**3. 미첨부 사유**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실·본부·국 소관 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**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24)**